

사망 혜택 (Death Benefits)

사망 혜택은 사망 후 유족에게 소득 보장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사망 혜택은 가입자의 사망 시 예기치 못한 소득 손실에 대비해 가족을 보호하며, 여기에는 현역, 장애 또는 은퇴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망 혜택 금액

사망 혜택 금액과 유형은 사망 시 다음과 같은 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역,
- 장애,
- 은퇴,
- 과거에 연금 가입했지만 현재는 연금국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

사망 시 가입자가 현역 또는 장애인인 경우, 급여 지속 혜택은 사망 혜택 기준 금액*과 같은 액수를 동일한 금액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불됩니다.

은퇴 후 사망할 경우, 사망 혜택은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혜택 금액은 은퇴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 은퇴 후 3년 이내에 사망 시 사망 혜택 기준 금액*을 기반으로 은퇴 후 3개월마다 1/12씩 줄어드는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은퇴 후 3년 이후에 사망 시 혜택 금액은 \$10,000**이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사역지에서 사임 후 연금 수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 혜택 수혜자는 \$10,000**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은퇴자가 연금을 2007년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거나, 은퇴 시 Rule of 70을 준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일괄 지급 사망 혜택 (Lump-sum death benefit)

사망 시 현역 또는 장애(또는 사망 혜택에 가입한 transitional participation plan 에 등록)인 경우, 이 사망 혜택은 사망 혜택 기준 금액과 \$11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가입자의 사망 시 나이를 기반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사망 나이	%	사망 나이	%
Under 31	400	41	190
31	380	42	180
32	360	43	170
33	340	44	160
34	320	45	150
35	300	46	140
36	280	47	130
37	260	48	120
38	240	49	110
39	220	50+	100
40	200		



사망 혜택 (Death Benefits)

은퇴자 또는 연금 수령권 (term-vested)이 있는 목회자/직원은 이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 혜택 (Children's education benefit)

사망 시 현역이거나, 장애인 또는, 현역에서 은퇴한 경우, 25세 미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들은 고등학교 이후 정규 교육을 받는 첫 4년 동안 매년 \$1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국은 12개월 동안 매월 자녀에게 직접 교육 혜택을 지급합니다. 가을 학기(10 월-3 월) 및 봄 학기(4 월-9 월)에 대해 각각 6회 지불합니다.

왜 수혜자를 지정해야 합니까?

사망 혜택이 가입자 의도한 대로 지급되도록 매년 수혜자를 검토하십시오.

*사망 급여 기준 금액은 연금 가입 기준 금액(연간 실제 급여와 공동체 목회자 중간 급여의 25% 중 더 큰 금액, IRS 한도 \$280,000까지) 또는 해당 중간 급여 (시간제 고용에 대해서는 비례 배당) 중 더 큰 금액입니다. 2020년도 IRS 한도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고 사망 혜택 일시금은 2019년의 \$100,000에서 인상된 \$110,000입니다.

**2020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는 플랜 규정 반영. 2019년도 혜택은 \$9,000 였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혜택 (Living needs benefit)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혜택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망 전에 일부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현역인 경우 예상 여명이 24개월 이하일 때, 2년 이상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및 말기 상태가 의도적 자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속 혜택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적 현가 및/또는
-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의 75%(사망 혜택 기준 액수와 \$110,000* 중 더 적은 금액, 사망 시 나이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곱한 값).

은퇴한 경우, 최대 \$10,000**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혜택은 일시불로 가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불된 금액은 사망 시 서류상의 수혜자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부양 가족에게 지불되는 사망 혜택에서 공제됩니다.

*사망 혜택 기준 액수는 연금 가입 기준 금액(연간 실제 급여와 목회자 중간 급여의 25% 중 더 큰 금액, IRS 한도 \$280,000까지) 또는 해당 중간 급여 (시간제 고용에 대해서는 비례 배당) 중 더 큰 금액입니다. 2020년도 IRS 한도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고 사망 혜택 일시금액은 2019년의 \$100,000에서 인상된 \$110,000입니다.

혜택 신청

가족 또는 배우자가 가입자의 사망을 연금국에 알리면 연금국은 유족에게 사망 혜택 청구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작성된 양식을 연금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수혜자 지정

BenefitsConnect 에 접속하셔서 수혜자 지정, 추가, 변경 그리고 지급 비율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지정한 수혜자 및 각 수혜자 지급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교회/고용기관이 여러분을 사망 혜택에 가입시키면, 가입 후 사망 혜택 수혜자를 지정하는 일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혜택 (Death Benefits)

비용/납입

사망 혜택 비용은 여러분의 교회/고용 기관이 전액 지불합니다. 여러분은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사망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pensions.org/benefitsguidance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금국 번호 800-773-7752(800-PRESPLAN)로 전화하십시오.

**2020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는 플랜 규정 반영. 2019년도 혜택은 \$9,000였습니다.

수혜자 지정

사망 혜택이 지불되도록 수혜자를 지정하십시오.

보장 추가

별도의 사망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사망 혜택(Supplemental Death Benefit)가입을 고려해보십시오.

가입

교회/고용기관이 여러분을 이 사망 혜택에 가입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플랜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플랜 문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pensions.org를 방문하거나 연금국에 800-773-7752(800-PRESPLAN)번으로 전화하십시오.

